학교공개의날

학부모교육자료



1. 학부모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1 자녀 성교육

♣ 자녀 성교육!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폭력의 피해자 되지 않기 교육보다는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 하지 않기,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등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시작이 성교육의 출발입니다.

♣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

- 1.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은 성폭력 예방의 기본자세입니다.
- 2. 성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 성에 대하여 엄격하며 금기시하는 자세보다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하며 평소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 줍니다
- 사소한 이야기라도 잘 들어주는 평소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 하도록 도우며 부모는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4.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5.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여 성교육 합니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의 정보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 6. 성교육 관련 도서를 활용하여 부모님께서 건강한 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 가장 좋은 성교육 선생님은 부모님 입니다.
- 7. 부부간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 앞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와 대화하기

- ■일상생활에서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 평소 자녀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 가정, 학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들을 준수하도록 지도합니다.
- ■부담스러운 주제라며 대화를 피하지 마세요.
- ■성과 성폭력을 주제로 자녀와의 소통을 시도해 보세요.

☆성폭력 발생장소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	숙박업소 등	야외,대중 교통 시설 등	주택가, 이면도로	자동차 안	화장실, 주차장

☆성폭력 가해자 유형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가족 및 친척
65.8%	18.8%	15.4%

서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안내

「스마트폰 설치 및 이용방법」









- ① 앱스토어에서 '성범죄 자 알림e' 앱 검색
- ② 본인인증
- ③ 지도검색
- ④ 성범죄자 확인
-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 성명, 사진, 나이, 신체정보, 실제거주지, 전자장치 등
- ☆알림기능으로 설정 :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하는 성 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정시간 : 1시간, 12시간, 24시간, 미설정
- ✿조건검색을 통해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여 알게 된 각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등에 의거 금지 (다만, 학생의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성범죄 알림e'웹사이트 안내 및 조회방법 전달, 홍보는 가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1. 디지털 성범죄란?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환경에서, 혹은 그것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불법촬영이나 소비(불법촬영물을 보는 것) 또는 복사**를 말합니다.

- ■디지털 세상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 ☆피해 알아차리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지금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 ☆상담하기 "말해도 괜찮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런 일이 계속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중단하고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 신고하기: 도와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경찰, 등등)
- ☆ 디지털범죄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는 곳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https://www.women1366.kr/stopds)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긴급전화 1366

2. 양성평등교육

1 학부모님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1. 양성평등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손상당하여서는 안되며,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와 조건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가. 평등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좋은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나. 양성평등 한 자녀 양육과 교육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해 주십시오.
-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 양육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 진로, 학업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시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어렸을 때부터 딸, 아들 모두 예술, 체육 등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키웁니다.
- ▶ '남성위주의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파생된 성차별의식'은 성폭력, 성희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예: 남자 - 능동적, 여자 - 수동적, 남여의 성욕은 다르다는 잘못된 믿음) 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양성평등 교육을 가정에서 부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성평등 실천을 촉진하는 생각들

- ▶ 집안일은 가족이 함께 분담하기
- ▶ 행복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는 의식 가지기
- ▶ 편견을 버리고 여자나 남자 모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 ▶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경우 승진, 임금의 기회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위한노력
- ▶ 21세기에 한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선 진적 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양성평등이다.

4.딸을 섬세하면서도 당당하게 키우는 방법

- ▶ 여자니까, 또는 여자아이답지 못하다 등의 성적 고정관념이 반영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 ▶ 미인콤플렉스를 가지지 않도록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게 합니다.
- ▶ 기존의 여성 가치인 얌전함과 예의 바른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무례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5. 아들을 씩씩하면서도 따뜻하게 키우는 방법

- ▶ 사내답다, 남자답다 등의 성적 고정관념이 반영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 ▶ 아들에게도 스스로 집안일을 거들게 함으로써 사회인이 되었을 때 갖춰야 하는 품성을 알게 합니다.
 - ▶ 동화나 드라마, 광고에 나오는 성적 고정관념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 ▶ 기존의 남성가치인 씩씩함이 남을 무시하는 강함이나 무례가 같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3. 생명존중 및 지살예방교육

1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 자료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 34분당 1명꼴로 자살하는 국가! 자살 학생 중 대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었고, 학생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이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감 혹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닐 것이라고 안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아이를 살펴보세요

☆이럴 때,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살의 위험 징후」

1. 과거에 자살 시도한 경험이 있을 때

자살시도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률이 5~6배 높습니다.

2. 극도로 우울해 하고 불안해하면서 지쳐있을 때

자살하는 사람의 80%이상은 우울증을 동반합니다.

3. 자신의 죽음이 가족 또는 주변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자신의 죽게 되었을 때 가족이나 주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자살위험이 높다고 보고 주시하여야 합니다.

4. 많이 초조해하고 불안해 하다가 갑자기 차분해지고 편안해질 때

자살하려는 사람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며 불안해하다가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나면 오히려 전보다 차분해지고 평온함을 보입니다.

5. 그 밖의 언어적 징후

"내 삶은 무가치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언젠가 꼭 죽을 거야." 등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6. 그 밖의 행동적 징후

오랫동안 만나지 않던 친지나 친구를 찾아가거나 본인의 물품을 정리하거나 아끼던 물품을 나누어 주는 행동, 유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마음은 함께. 행동은 단호하게

- ▶ 자살 위기가 있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 ▶ 과도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 ▶ 자살에 대해 공개적이고 사실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 ▶ 위기자의 고민이나 문제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위기자의 자살협박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자살이 옳고 그른지 토론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설교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전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대화가 비밀이라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자살 위기를 겪은 사람은 반드시 정신과나 전문기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살 위험이 있을 때

「자살시도를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

▶ 삶의 가치나 의미에 대한 강한 믿음, 신체적 사회적 건강, 친한 친구, 지지적인 타인, 가족의

사랑, 관심,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적 태도, 학교나 사회적 활동 참여, 자원봉사, 종교 활동 등이 보호막이 됩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 생명의 전화 ☎1588-9191 **▶** 한국청소년상담원 ☎1388

▶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 상담 : www,suicidepreventation.or.kr

4. 미세먼지 대응법

1 미세먼지 실시간 확인하기

- 1.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확인하기
 - 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 나.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 다운 설치: 동네 및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항

경보단계	대응사항 및 행동요령	
주의보 PM ₁₀ 150이상 또는 PM _{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 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 ₁₀ 300이상 또는 PM _{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체육대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조기 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 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꼭 지켜 주세요	마스크 (식약청 미세먼지 공인인증 마스크) 착용하기양치질, 손씻기 잘 실천하기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활동 자제하기	

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학생 질병 결석 인정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조건]

- 1) 관련서류제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는 사전 (학년 초 1회)에 전문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미세먼지와의 질환과의 관련성 명시)를 학교에 제출
- 2) 고농도 미세먼지 시: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 동네 대기정보(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3) 사전연락: 학부모가 학교에 담임교사에게 사전(1교시 수업시작 전)에 연락(전화, 문자 등) 취한 경우에 해당

5.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신체학대

•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의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



성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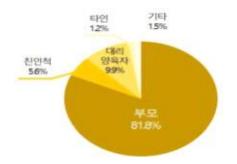
방임·유기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1세미만	2.6%	10~12세	21.0%
1~3세	12%	13~15세	23%
4~6세	13.4%	16~17세	9.3%
7~9세	18.6%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 아동학대의 신고 절차 및 방법

사후지원 및 서비스 협조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된다.



🧩 부모되기 십계명 🧩

- 🌱 하나.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 ▼ 둘.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 셋.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 🌱 넷. 때리지 마세요.
- 🌱 다섯. 버릇없이 키우지 마세요.
- 🌱 여섯.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 🌱 일곱. 아이 일을 대신 해주지 마세요.
- 🦖 여덟. 아이에게 하는 사과를 부끄러워 마세요.
- 🌱 아홉. 아이가 화낸다고 같이 화내지 마세요.
- ❤ 열. 아빠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질을 더 신경쓰세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6. 성매매 예방 교육

1 성매매, 왜 안되는 걸까요?

성매매는 성차별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 인권 침해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돈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나요? 몸도 감정도 인격도 살 수 있는 건가요? 왜 남성은 여성의 성을 사야만 할까요? 이처럼 성매매는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돈으로 남성이 여성의 성을 쉽게 살 수 있고 함부로 그 여성에게 해도 된다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인권침해)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강요, 억압, 폭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 및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첫째,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둘째,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 하는 업주, 포주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

셋째,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넷째, 청소년의 몸과 성적행위를 얻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